

-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2507호
----------	--------

2020. 10. 20.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20. 09. 28. 양천구청장 제출
나. 회부일자 : 2020. 10. 07. 행정재경위원회
다. 상정일자 : 제28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

2020. 10. 20. 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 (행정지원국장)

가. 제안이유

2021년 1월 개관 예정인 건강힐링문화관 내 “건강힐링문화
체육센터”를 체육시설에 신설하여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
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구립 체육시설에 “건강힐링문화체육센터”를 신설하고, 사용료
및 수강료는 “체육센터”의 기준에 따르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한동석)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.

○ 주요내용

- 별표 1의 목동문화체육센터란 다음에 건강힐링문화체육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.

--	--	--

- 또한 별표 2의 공통사항 제1호 중 "목동문화체육센터"를 "목동문화체육센터, 건강힐링문화체육센터"로 하는 것입니다.

○ 법령검토

- 상위법인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조(생활체육시설)와 제8조(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),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5조(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)는 생활체육시설을 정의하고, 시설의 개방과 이용 및 이용료의 부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.

또한, 「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'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'를 별표1에 규정하고 있고 '체육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기준'을 별표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다.

2021년1월 개관 예정인 “건강힐링문화체육센터”는 상위 법령에 따라 생활체육시설로 정의되고, 센터의 개방 및 이용과 이용료를 부과해야 합니다. 이에 따라 본 조례의 별표 1과 2의 개정을 통해 “건강힐링문화체육센터”의 센터의 기능 및 위치와 사용료 등을 추가하는 것입니다.

- 상위법령을 따른 개정안으로 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.

○ 문제점

- 상위법을 따르고 있어 문제점은 없습니다.

○ 종합의견

- 「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건강힐링문화관 내에 건립될 실내체육관인 “건강힐링문화체육센터”를 추가하여 당 조례의 목적인 “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”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.

상위법령을 준수하고 있고, 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한 개정이라 보고드립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적의원 9명, 출석의원 5명 만장일치 의결)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